

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

개정 2010. 6. 23.

전면개정 2021. 3. 23.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본 연맹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며 경기력향상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함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본 연맹의 국가대표 선수, 국가대표 후보선수, 청소년대표 선수 선발과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심의, 검토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.

- ①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
 1. 국가대표, 국가대표 후보선수, 청소년대표 선수선발에 관한사항
 2. 국제대회 파견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
 3. 기타 선발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
- ② 각종지도자 선발에 관한 사항
- ③ 선수단 관리에 관한 사항
- ④ 경기력 향상 및 훈련에 관한 사항
- ⑤ 그 밖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조직) ①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며, 부위원장 및 위원,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(운영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3.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차기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4.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,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5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부 칙(2010. 6. 23.)

- 제1조(시행일)**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0.2.26.)
②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0.6.23.)

부 칙(2021. 3 23.)

- 제1조(시행일)**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21.3.23.)